



제427회국회(임시회)
제3차 환경노동위원회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 〉

■ 김형동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5937호)

2025. 7.

환 경 노 동 위 원 회

전문위원 한석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1.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	3

I. 제안경위

2024년 11월 27일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,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, 연 1회,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(안 제70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93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II. 검토의견

1.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급여 신설

가. 개정안의 주요내용

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한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으로,

함께 제출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936호)¹⁾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(안 제70조).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0조(육아휴직 급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(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)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	제70조(육아휴직 급여) ① ----- ----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-----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1) 육아휴직을 연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 가능

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 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. ② ~ ⑤ (생 략)	----- 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나. 검토의견

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936호)에서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하고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1주 단위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급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현행 30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.

함께 제출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,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(1년)에서 차감되게 되는바,²⁾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단기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2) 「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936호)

제19조(육아휴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·휴교, 방학,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단기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로 하며,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.

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, 개정안에 따라 단기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3,625억원(연평균 725억원)으로 예측됨.³⁾

< 추가재정소요(추정치): 2026~2030년 >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육아휴직 급여 (안 제70조)	672	698	724	751	780	3,625	725

주: 1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2.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4. 실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

자료: 고용노동부 「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II-1)」, 2024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고용노동부는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및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의 축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
02)6788-5539

3) 육아휴직 12개월 미만 사용 인원이 단기육아휴직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